
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
일부개정법률안  
(박희승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0416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6. 8. 4.

발 의 자 : 박희승 · 윤준병 · 장철민  
김의겸 · 허성무 · 안호영  
오세희 · 임문영 · 김원이  
朴芝源 · 전은수 의원  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우선 공공조달, 수출유망 중소기업 · 품목에 대한 우선 정부지원을 규정하고 있고,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은 지역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보 사업 추진 시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TV홈쇼핑 입점지원 대상 업체 선정 시 지역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등 판로지원사업의 시행 단계에서 지역의 특성 · 여건에 대한 고려 부족으로 수혜자가 대도시권 중소기업에 편중되고 있어, 지역 우선 지원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해 판로지원기관이 소외된 지역을 지원하고 그 실적을 관리 · 제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지역 특산물이나 인구감소지역 생산 물품 등에 대한 우선지원을 의무화하고,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판로지원기관의 우선지원 내용

- 실적을 종합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성장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판로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0조의2).

##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0조의2(지역특화중소기업제품의 지정·지원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제품을 지역특화중소기업제품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에 따른 지리적표시품
2. 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
3.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혁신 및 균형성장을 위하여 판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제품

②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중소기업제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내용과 실적을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

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기관·단체의 장에게 지원내용과 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기관·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·절차, 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의 기준·방법, 제3항에 따른 종합·보고의 시기·방법 및 그 밖에 지역특화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| <p><u>제30조의2(지역특화중소기업제품의 지정·지원)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제품을 지역특화중소기업제품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에 따른 지리적표시품</u></li> <li><u>2. 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</u><br/><u>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인</u><br/><u>구감소지역에 입주한 중소기</u><br/><u>업자가 생산한 물품</u></li> <li><u>3. 그 밖에 중소기업부장관</u><br/><u>이 지역혁신 및 균형성장을</u><br/><u>위하여 판로지원이 필요하</u><br/><u>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제품</u><br/><u>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</u><br/><u>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제품</u></li> </ol> <p><u>②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</u><br/><u>나 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</u><br/><u>된 지역특화중소기업제품에 대</u></p> |

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내용과 실적을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기관·단체의 장에게 지원내용과 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기관·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·절차, 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의 기준·방법, 제3항에 따른 종합·보고의 시기·방법 및 그 밖에 지역특화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